#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77

발의연월일: 2022. 3. 28.

발 의 자:이종성・구자근・김승수

김형동 · 박대수 · 박덕흠

성일종 · 신원식 · 이명수

전주혜 · 조명희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(이하 "중증장애인"이라 함)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.

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7년 12월 도입된 이래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,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, 수가가 맞지않아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따라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,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(안 제16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(이하 "중증장애인"이라 한다)"을 "장애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및 내용"을 "내용"으로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장애인 건강 주치의) ①	제16조(장애인 건강 주치의) ① -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장애</u>	<u></u> 장애인
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	
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(이	
하 "중증장애인"이라 한다)에	
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	
도를 시행할 수 있다.	
<u> &lt;신 설&gt;</u>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
	강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는 의
	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
	<u>을 할 수 있다.</u>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	<u>③</u>
주치의 제도의 <u>대상이 되는 중</u>	<u>내용</u>
<u>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</u> 등에	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<b>.</b>
정한다.	